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-452호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별표1 제3호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하는 **고위험 병원체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**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